

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우16304 /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(송죽동) 4층 / 전화(031)243-5221,2 / 팩스(031)251-9770 / www.kgta.or.kr

문서번호 경기화협 제144호	선 결		지시	
시행일자 2021. 2. 23.	접 수	일자 시간	결 재 · 공 람	
		번호		
수 신 각회원 (경유)	처리과			
참 조	담당자			

제 목 2021년도 운수종사자교육 일정 안내 및 실시간 온라인교육 참여 매뉴얼 배포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 21-25호(2021. 2. 8.) 및 경교연 21-28(2021. 2. 16.)호와 관련입니다.

3.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202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이 현재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온라인교육 추진시까지 교육공백이 예상되는 바, 기존교육 재개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온라인교육(ZOOM방식)을 진행하오니 각 회원님께서 위·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경기도교통연수원 ☎(031)251-6191~3

(전화예약불가, 홈페이지 &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약만 가능)

- 붙임 : 1. 실시간 온라인교육 일정 1부.
- 2. 실시간 온라인교육 참여 매뉴얼 1부.
- 3. 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. 끝.

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 이 사 장 고 달 

□ 실시간 온라인교육 일정

2021.02.19. 현재

교육장	교육일	교육시간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3일(수)	09:00 ~ 13:00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8일(월)	09:00 ~ 13:00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15일(월)	09:00 ~ 13:00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20일(토)	09:00 ~ 13:00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22일(월)	09:00 ~ 13:00
온라인(화상회의)	3월 24일(수)	09:00 ~ 13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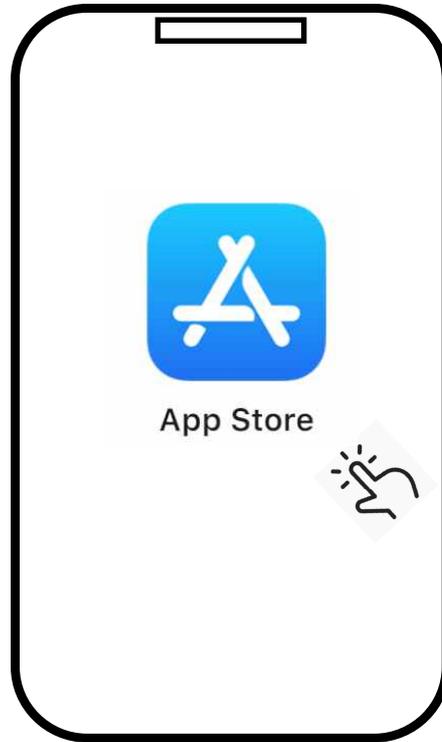
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하는
실시간 온라인교육
참여방법
휴대폰용 아이폰



본 매뉴얼은 기본 안내 사항입니다
교육생의 사용환경 및 사용기기에
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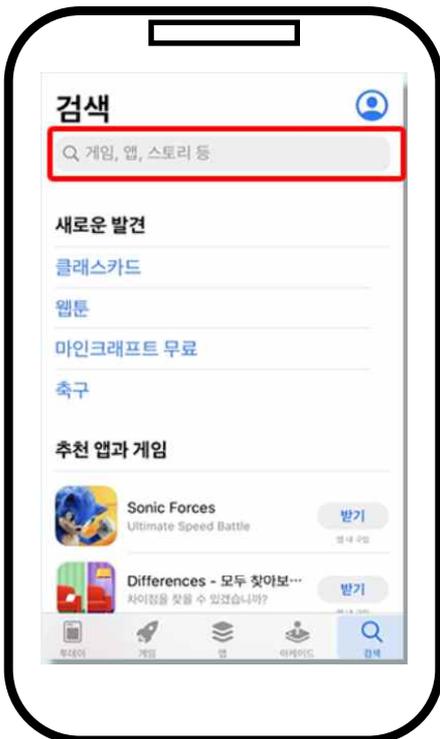
교육문의
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운영팀
연결 후

따라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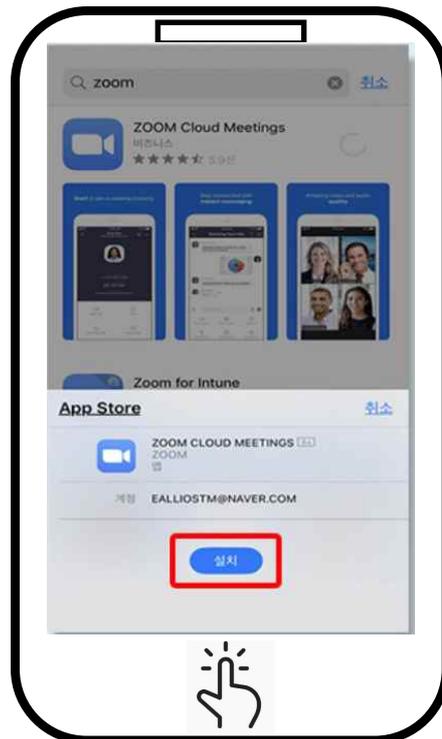
- ① 휴대폰을 켜다
- ② 왼쪽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진 어플을 찾아 실행 시킨다

따라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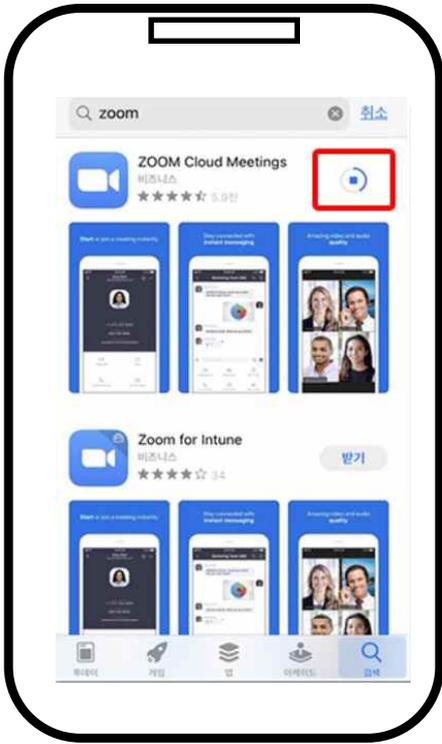


- ① 왼쪽에 빨강 게 표시된 검색창에 "ZOOM" 입력 후 검색

따라하기



- ① 왼쪽에 빨강 게 표시된 설치 버튼 선택 후 설치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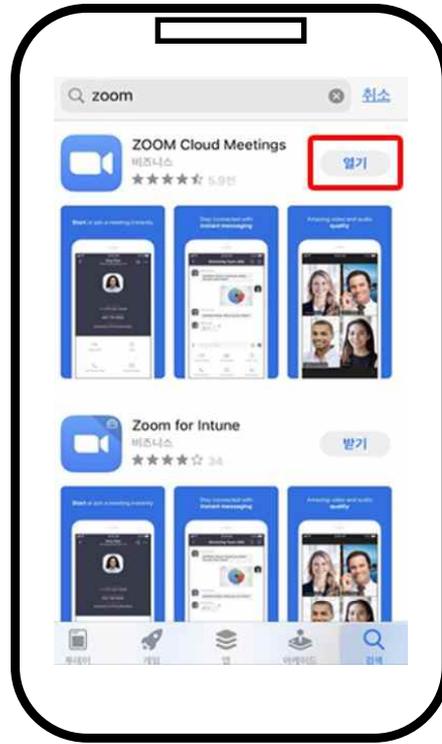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

① 프로그램 설치 중입니다

설치완료 까지 기다려주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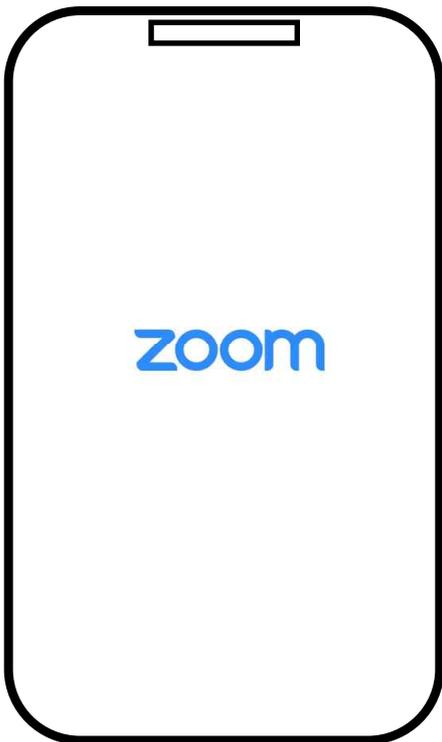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

① 설치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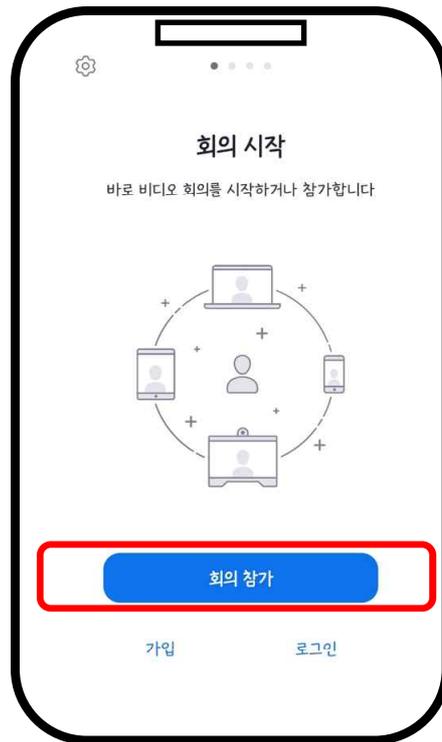
빨강게 표시된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



따라하기

① 줌 첫 화면입니다

잠시만 기다려주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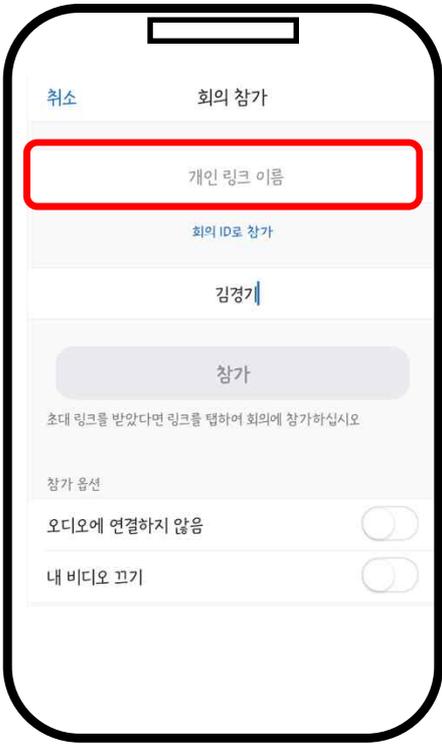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① 왼쪽 하단 빨강게 표시된 회의참가 버튼을 눌러주세요

회원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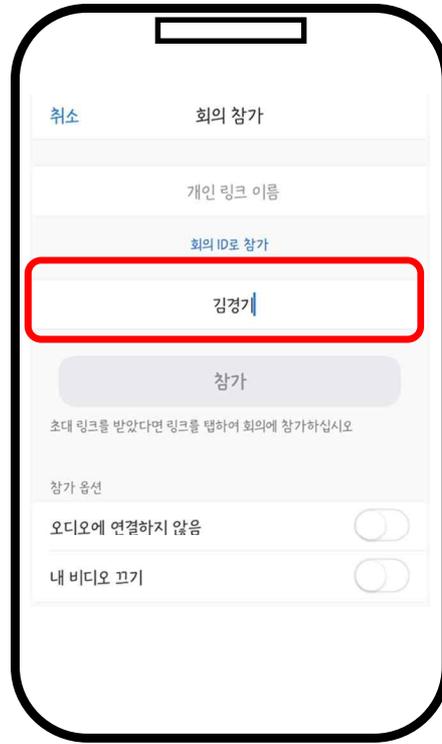




따라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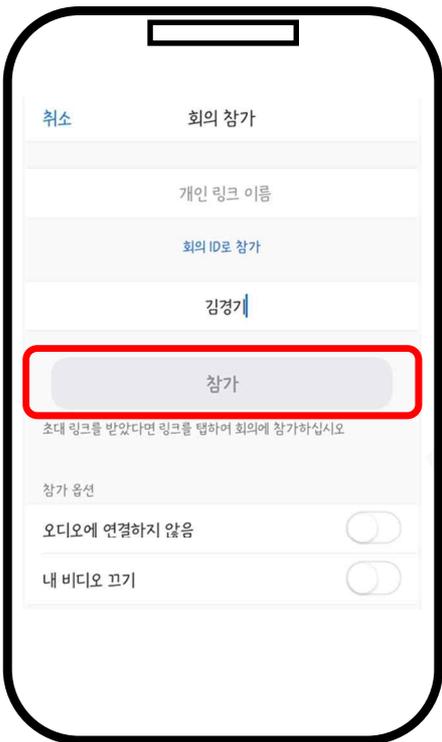
① 교육 참여에 필요한 **참여코드 자리**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세요



따라하기



① **빨간** 표시된 곳에 실명/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



따라하기



① **참가버튼** 누르기



따라하기



① 연수원에서 제공한 회의 **암호 자리**는 정확하게 입력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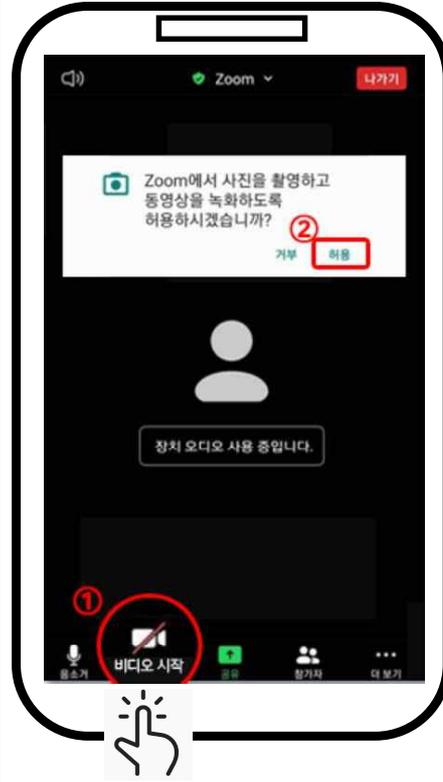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① 연수원 교육 담당자의

입장 승인

완료 후 교육 참가



따라하기



① 비디오 시작 버튼 누르기

② 동영상 녹화 허용 누르기



따라하기

교육 참여 완료

교육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

※ 예시화면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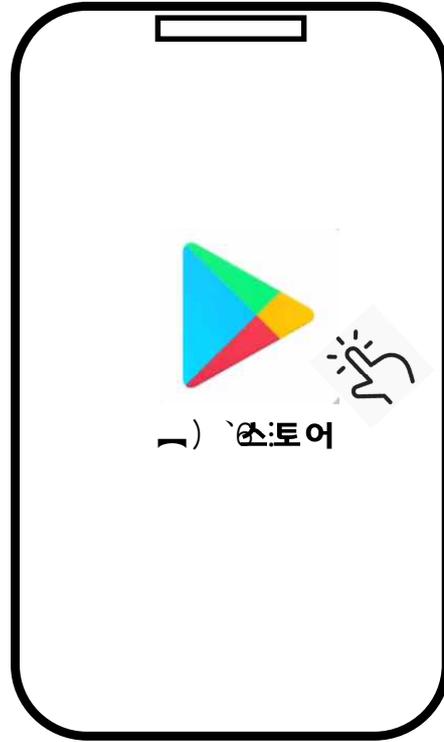
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하는
실시간 온라인교육
참여방법
휴대폰용 안드로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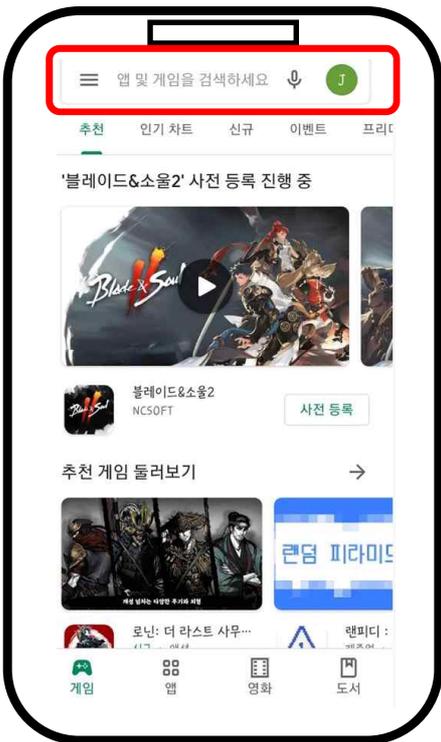
본 매뉴얼은 기본 안내 사항입니다
교육생의 사용환경 및 사용기기에
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

교육문의
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운영팀
연결 후

따라하기



- ① 휴대폰을 켜다
- ② 왼쪽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진 스토어 앱을 찾아 실행 시킨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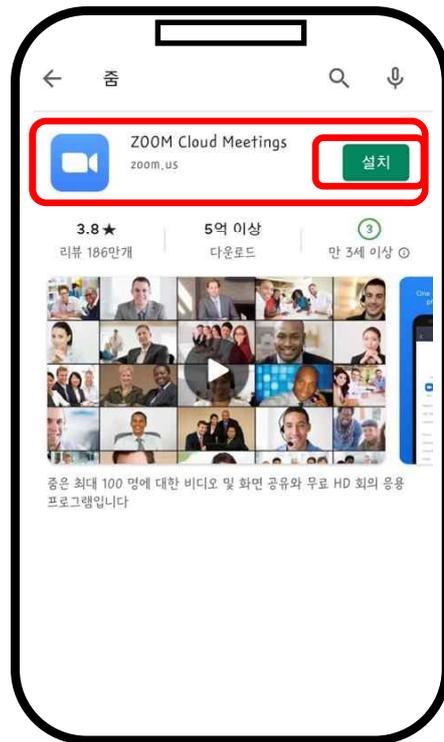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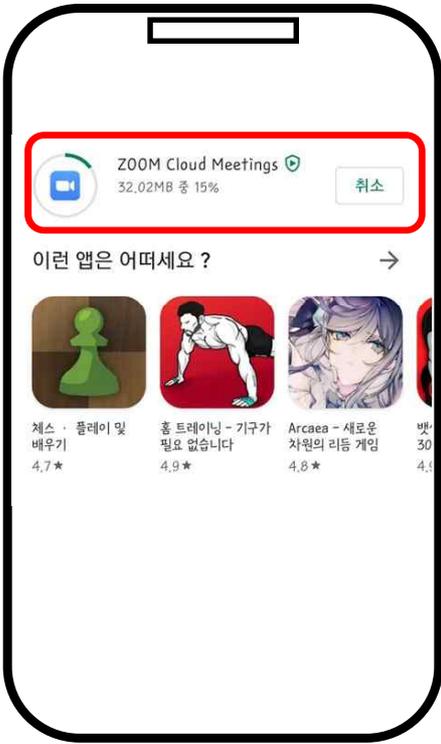


- ① 왼쪽에 빨강 게 표시된 검색창에 "ZOOM" 또는 "줌" 입력 후 검색

따라하기



- ① 왼쪽에 빨강 게 표시된 설치 버튼 선택 후 설치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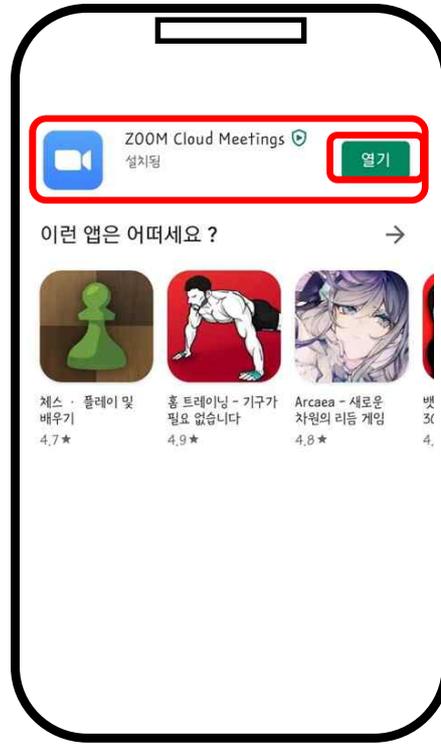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

① 프로그램 설치 중입니다

설치완료 까지 기다려주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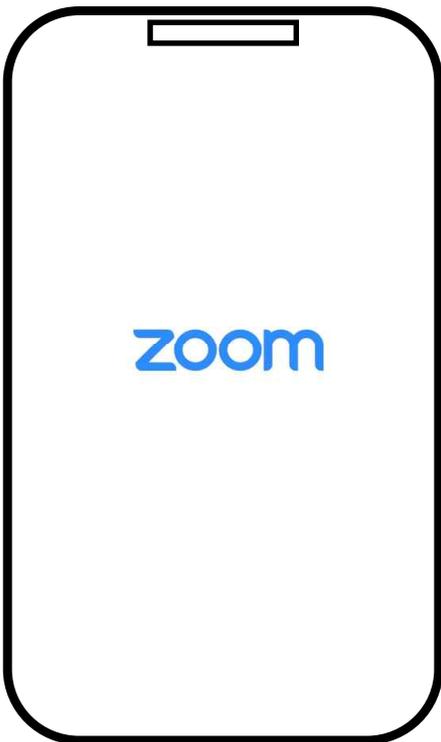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

① 설치완료

빨강게 표시된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



따라하기

① 줌 첫 화면입니다

잠시만 기다려주세요



따라하기

① 왼쪽 하단 빨강게 표시된 회의참가 버튼을 눌러주세요

회원가입



취소 회의 참가

개인 링크 이름

회의 ID로 참가

김경기

참가

초대 링크를 받았다면 링크를 탭하여 회의에 참가하십시오

참가 옵션

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

내 비디오 끄기

따라하기



① 교육 참여에 필요한 **참여코드 자리**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세요

취소 회의 참가

개인 링크 이름

회의 ID로 참가

김경기

참가

초대 링크를 받았다면 링크를 탭하여 회의에 참가하십시오

참가 옵션

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

내 비디오 끄기

따라하기



① **빨간색** 표시된 곳에 실명/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

취소 회의 참가

개인 링크 이름

회의 ID로 참가

김경기

참가

초대 링크를 받았다면 링크를 탭하여 회의에 참가하십시오

참가 옵션

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

내 비디오 끄기

따라하기



① **참가버튼** 누르기

회의 준비 중...

회의 암호를 입력하세요.

회의 암호

취소 확인

따라하기



① 연수원에서 제공한 회의 **암호 자리**는 정확하게 입력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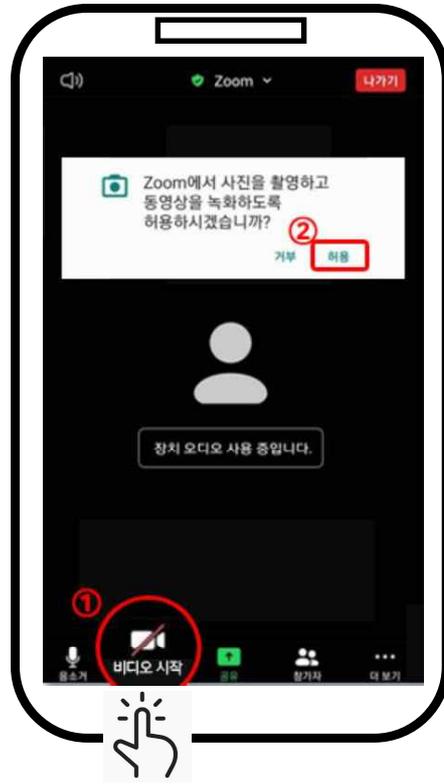


따라하기

① 연수원 교육 담당자의

입장 승인

완료 후 교육 참가



따라하기



① 비디오 시작 버튼 누르기

② 동영상 녹화 허용 누르기



※ 예시화면입니다

따라하기

교육 참여 완료

교육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

운수종사자(보수)교육 관련 행정처분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[별표 1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10호서목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처 분 기 준
10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○사업 일부정지(10일)

[별표 2]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(제7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 [시행일: 2019. 1. 1.] 제2호의 제3호머목, 제2호의 제17호차목, 제2호 비고 제1호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징 금 의 금 액
3.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.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,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30만원

※ 비고

-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.
(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×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)
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<개정 2018. 11. 27.>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 태 료 금 액
아. 운수사업자가 법 제11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,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5호	50만원
보.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	50만원